

特別企劃人인증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許……○
- …… 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本으로 한 資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 6 回 ◎

● 필리핀(2) ●

(d) 意匠에 關한 主要規定

(i) 保護對象

製造品用 장식意匠 (法第165號, 55條; 規則 122條)

(ii) 保護取得 基準

意匠은 새롭고, 최초이고 또한 장식적일 때 특허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一般新規性基準이 意匠에도 通用된다. 만일 그 意匠이 出願에 의하여創造되기 前에 필리핀에서 알려진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使用된 것일 때, 그 意匠이 登錄·特許를 받았거나 필리핀에서 油印된 公報에 게재되어 있거나 또는 出願前 6個月以上 外國에서 公報에 게재되어 있었을 때, 그 意匠이 出願前 6個月以上동안 필리핀에서 公衆에게 販賣 또는 使用되었을 때, 또는 그 意匠의 出願前에 먼저出願하여 許與받은 特許의 主體일 경우에는 新規性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法第165號, 9, 55 및 56條; 規則 122, 123 및 124條)

(iii) 保護받지 못하는 경우; 規定이 없음.

(iv) 登錄節次; 公開

發明特許나 實用新案特許의 경우와 같다. (前號“工業所有權”(c)(vi) 參照)(法第165號, 55 및 57條; 規則 125條)

(v) 獨占權의 範圍

發明特許나 實用新案特許의 경우와 같다. (前號“工業所有權”(c)(vii) 參照)(法第165號, 37, 55, 및 60條)

意匠特許도 發明特許와 같은 方式으로 強制實施權을 許與받을 수 있다. (前號“工業所有權”(c)(ix) 參照)(法第165號, 55(5)條)

(vi) 存續期間 및 維持

存續期間

許與日로부터 5年間 (法第165號, 58條)

維持

• 意匠特許의 期限은 두번의 연속된, 5년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 그 意匠이 필리핀에서 商業的 또는 產業的으로 使用되거나, 非使用의 경우에는 합법적인理由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法第165號, 58條; 規則 149條)

• 意匠特許는 年次特許料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法第165號, 55(5)條)

(e) 特徵標章에 關한 主要規定

(i) 保護받는 標章의 種類

• 聯合標章을 포함한 商標 및 서비스標(法第166號 2, 38 및 40條)

• 聯合商號를 포함한 商號法 第166號 2, 38, 40條

法律에서는 또한 이름이나 所有權 表示를 特許廳에 비치된 음료수 용기에捺印하는 特別등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과 所有權 表示는 소다수, 사이다, 우유, 크림을 製造하거나 販賣하는 사람 또는 합법적인 기타 음료수를 병·상자·통·나무통등의 용기에 담아 製造하거나 販賣코자 하는 사람이 所有權을 表示할 때 使用된다. (法第623號 1, 2, 3條 規則 33, 36, 37條)

(ii) 保護받을 수 있는 標章

• 商標: 날말, 名稱, 象徵, 기호, 標紙 또는 徽章 혹은 이들의 結合體에서 비롯된 것.

• 서비스 標: 標章, 이름, 象徵, 表題, 稱號, 特性名, 라디오와 다른 廣告媒體의 特定記事

• 商號: 個人名, 姓氏, 會社名, 徽章 또는 날말 일

체(法第166號 38 및 40條, 規則 29, 30, 31 및 32條)

補助登錄簿(주¹)에 登錄을 하기 위해서 商標나 商號는 象徵, 레테르, 包裝, 商品의 形態, 商品名, 모국어, 선전문구, 구절, 標語, 會社名, 원산지명, 수량, 考案 또는 이들의 結合으로 구성할 수 있다. (法第166號 19—A條)

주¹: 主登錄籍에 追加하여 補助登錄簿가 特許廳에 비치된다. 出願人の 商品 또는 營業이 구별되고 出願前 1年以上 어떤 商品, 事業 또는 營業과 關聯하여 所有者에 의해 商業의 으로 適法하게 使用되어진 모든 商標나 商號 가운데 登錄原簿에 登錄되지 않은 것은 (法에 의해 登錄不可로 판정받은 것은 제외) 補助登錄簿에 登錄될 수 있다. (法第166號, 19—A (1)條)

(iii) 權利의 獲得

필리핀에서 特徵標章에 대한 權利는 去來上 最初로 사용함으로써 取得된다. 누구든 合法의 으로 어떤 종류의 商品을 生產하여 取扱하고, 서비스를 提供하며, 營業에 종사하는 사람은 生產이나 去來, 事業 또는 提供하는 서비스에 이들을 直接 사용함으로써 商標와 서비스標 및 타인에게 도용됨이 없이 商號를 獨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와 타인의 영업·서비스 사업을 구別시킬 수 있다. 商標·서비스標·商號의 所有權 및 그 占有는 他財產權과 同一한 方法으로 同一한範圍까지 認定되고 保護된다. 어떤 商標·商號가 필리핀에서 이미 使用되었거나 現在 使用되고 있는 商標 또는 商號에 저촉되면 登錄이 되지 않는다. (法第166號 2—A, 4(d) 및 5(a)條 規則 34, 35條)

商標나 商號가 出願人에 의해 使用되고 그러한 사용에 의해 현저하게 된 商標나 商號는 登錄이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의 경우 그 商標나 商號가 出願前 5년간 去來에서 그대로 사실상 獨점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證明은 그 표장이 현저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法第166號, 4(f)條, 規則 43(f)條).

(iv) 海外에서의 出願 및 登錄의 效果

外國人 所有의 商標나 商號는 필리핀에서 出願하기前 적어도 두 달이상 實제로 使用되었고 또한 그 出願인이 속한 國家가 필리핀 國民에게도 同等한 權利를 주고 있는 경우에 登錄될 수 있다. (法第166號, 2條; 規則 41條)

外國人이 필리핀에서 商標 또는 商號를 登錄하기 위해서는 出願인이 商業의 으로 그것의 使用을 言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인의 本國에서 當該商標 또는 商

號가 登錄된 경우이어야 한다. (法第166號, 37(2)條)

필리핀이 加入하고 있는 商標나 商號에 關한 協定이나 條約에 加入한 國家의 國民·居住者 또는 그곳에 會社를 設立한 者 및 同 協定 및 條約에 加入한 外國에서 同 商標 또는 商號를 出願한 者에 의한 필리핀에서의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을 위한 出願은 필리핀에서의 出願日字를 當該 外國에서의 出願日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効力과 效果를 부여한다. 但, 當該國에서의 先出願日로 부터 6個月 以內에 필리핀에서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商業에 있어서의 使用을 言及할 必要는 없다. (法第166號, 37條)

필리핀에서 標章의 登錄은 本國의 登錄與否와는 無關하다. 필리핀과 協定 또는 條約을 締結한 國家 國民의 商號는 어떤 商標의 一部를 形成하건 안 하건간에 登錄 또는 出願義務 없이 保護된다. (法第166號, 37條)

(v) 登錄節次; 公開

出願이 此연 形式 및 内容審查를 받은 후 調査가 實施된다. 特許廳長은 先登錄이나 先出願된 것이 發見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類似한 商標 또는 商號의 경우에는 抵觸이 存在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抵觸은 補助登錄簿가 아닌 主登錄簿에 포함된 出願 또는 登錄에 관해서만 선언될 수 있다. (法第166號, 7 및 10—A條; 規則 85, 179 및 180條)

商標 또는 商號는 異議申請에 대비하여 官報에 게재된다. 利害當事者는 누구나 發刊後 30日 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異議申請用의 公告나 異議申請은 補助登錄簿가 아닌 主登錄簿에 포함된 商標 또는 商號의 出願 및 登錄에 關하여 固한된다. (法第166號 8 및 19—A (5)條; 規則 107, 109 및 121條)

異議申請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登錄證明이 發給되고 그 内容을 官報에 게재된다. (法第166號, 10 및 19—A條; 規則 110 및 111條)

(vi) 獨占權의 範圍

商標 또는 商號의 登錄으로 그 所有者의 同意 없이 그것의 再生品, 複제품, 모조품, 어떤 商品·營業 또는 事業의 販賣 및 廣告와 關聯한 그것의 再生 및 모방 또는 그것의 使用이同一한 商品·營業·事業인 것처럼 구매자를 혼동·기만할 우려가 있도록 使用하는 者에 對하여 대처할 權限을 부여 받는다. (法第166號, 22條)

(vii) 存續期間 및 維持

登錄日로부터 20年 동안 効力を 發生한다. (法第166號, 12條; 規則 112條)

■ 아시아地域 工業所有權制度 ■

登録을 有効하게 維持하기 위해서는 登錄證 發給日의 5年, 10年 및 15년되는 날로부터 1年 以内에 그 商標 및 商號를 여전히 使用하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非使用의 경우에는 그에 대처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法 第166號, 12條; 規則 112 및 141條)

登録은 계속되는 20年동안 更新될 수 있다. 更新申請은 存續期間 滿了日로부터 3個月 以内에 手數料를 납부함으로써 할 수 있다. (法第166號, 15條; 規則 156條)

(viii) 實施義務

商標 또는 商號를 有効하게 維持하기 위해서는 使用證明(使用증거서류 제출)이 必要하다. 만일 登錄證 發給日로부터 5年, 10年, 15년 되는 날로부터 1年 以内에 그 商標 또는 商號를 여전히 使用하고 있다는 증거서류가 접수되는 않을 경우에는 特許廳은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法第166號, 12條; 規則 112 및 141條)

登錄된 商標 또는 商號를 取消시킬 목적으로 利害當事者에 의한 申請으로 인하여 登錄이 取消될 수도 있다. 어떤 商標 또는 商號가 末消申請 提出日前 5年以上 實際 계속적으로 使用되지 않았다면 그 商標 또는 商號는 末消된 것으로 간주한다. (法第166號 17(6)條; 規則 192(b)條)

(ix) 讓渡 및 實施權許與

登錄된 商標 또는 商號, 또한 그들의 出願은 그 商標 또는 商號가 使用된 事業의 營業權과 더불어 讓渡될 수 있다. 또한 그 商標 또는 商號의 使用과 關聯된 事業 및 그 商標 또는 商號에 의해 상징화된 事業의 營業權의 一部와 함께 讓渡될 수도 있다. (法第166號, 31條; 規則 148條)

讓渡는 書面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公證人이나 公認된 公務員 입회하에 인정받아야 한다. 만일 許渡日後 3個月 以内 또는 後續 許渡前에 特許廳에 그 許渡事實이 記錄되지 않으면 後續 구매자에 대하여 행해진 許渡는 無効이다. (法第166號, 31條; 規則 151條)

實施權許與는 許渡와 같은 規定 및 適用을 받는다. (規則 147, 149, 151 및 152條)

다음 號의 “技術移轉(1)” 參照

(f) 消費者保護에 관한 主要規定

필리핀에서 이미 登錄되었거나 現在 使用되고 있는 商標 또는 商號와 매우 類似하여 購賣者를 기만하거나 혼동 또는 실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商標 또는 商號는 登錄될 수 없다. (法 第166號, 4(d)條; 商標, 規則 43(d)條)

(g) 채택되거나 사용중인 國際分類

- 國際特許分類(IPC)
- 標章의 登錄을 目的으로 한 商品 및 營業의 國際分類(商標 規則 82條)

(h) 訴訟節次를 관장하는 所管 官廳

(i) 異議申請

特許(發明, 實用新案, 意匠)에 관한 異議申請 節次는 없다. 特徵標章의 경우에 特許廳長에게 異議申請을 하고 特許廳長이 決定한다. 廉長의 決定에 불복할 때에는 抗告法院에 抗告할 수 있으며 거기에도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法第166號, 8 및 9條; 共和國法 5434號(1968年 9月 9日))

(ii) 無效

特許(發明, 實用新案, 意匠) 또는 登錄(商標, 商號)의 取消는 特許廳長이 決定하고 訂正한다. 廉長의 決定에 불복할 때에는 抗告法院에 抗告할 수 있으며 거기에도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法第165號, 28, 29 및 46條; 法第166號, 18 및 19條; 共和國法 5434號(1968年 9月 9日))

(iii) 侵 害

工業所有權의 侵害에 관한 訴訟節次는 第1審이 열리기 전에 이루어진다. (法第165號 42條; 法166號 27條)

■ 政府 所管 部處 ■

(a) 名稱 및 住所

필리핀 商工部 特許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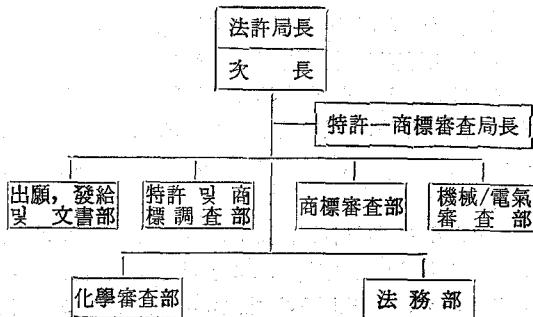
Midland Buenida Building, 403 Gil Puyat Avenue,
Makati, Metro Manila

(b) 國家 機關內의 位罰

필리핀 特許廳은 商工部의 行政指導 및 감독을 받는다.

(c) 內部 組織

特許廳의 組織 및 機構는 다음 表와 같다.



(d) 機能

特許廳은 다음과 같은機能을 가지고 있다.

- i) 工業所有權의 出願 接受, 處理 및 登錄, 그리고 形式 및 內容 審查
- ii) 商標 및 商號에 관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그리고 工業所有權의 無効決定 및 發表
- iii) 特許(發明, 實用新案, 意匠) 許與 및 特徵 標章(商標, 商號)의 登錄
- iv) 關聯 登錄簿의 維持, 特許情報管理, 公共機關의 研究員 및 個人研究員들에게의 特許情報제공업무
또한 特許廳은 科學的研究 및 發明을 促進시키고 發明에 關한 情報를 확산시킬 책임도 가지고 있다.(大統領 指示書 第721號, 6條)
- (e) 基他 國內 또는 國際機關과의 關係
特許廳과 商工部(MTI)는 特許(發明,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商號 포함)의 마이크로필름製作計劃 및 데이터베이스 計劃의 확장에 協力하기로 同意했다.
- 또한 特許廳은 필리핀 發明開發機構(The Philippine Invention Development Institute)와도 局部的 發明活動 및 기술혁신활동 등에 대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案) 本會 發明振興 業(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아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駛旋
- ◎ 優秀發明 試作品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家 結緣 (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

(f) 職員

特許廳은 178名의 職員이 있으며, 분포는 다음과 같다.

• 職長室	4名
• 化學審查部	35名
• 機械一電氣 審查部	35名
• 商標審查部	35名
• 出願, 發氣 및 文書部	26名
• 特許 및 商標 調査部	33名
• 法務部	10名

(g) 건물 및 시설

(i) 건물

特許廳은 1982年에 Makati에 있는 商工部(MTI) 근처의 商業센터로 移轉하였으며 이로인해 技術研究센터(TRC)의 컴퓨터설비를 쉽게 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에는 이 빌딩의 2개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約 1,600m²에 달하고 있다.

(ii) 시설

特許廳은 特許 및 商標에 관한 書類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적·技術的情報를 再生하기 위한 카메라 프로세서, 해독기, 프린터 및 마이크로필름 장비를 갖추고 있다.
<계속>